

〈제3주제〉 직장

직장 건강증진

김 대 희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직장 건강증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대희

직장 건강증진의 필요성

- 부적절 작업조건으로 인한 상병 결근율은 노동비용 증가, 생산성 제한
- 전통적 산업보건/안전 수칙은 직업관련 불건강/안녕에 제한적 효과
- 서비스분야 확대 등으로 수준 높고 동기화된 노동자 필요: 건강증진 작업조건
- 효율적 대응방안 없는 의료비 증가 경험

한국의 근로자건강증진 (New Health Plan 2010)

- 2002년 계획:
 - *근로자건강증진 영역 없음.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역으로는 모자보건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만.
- 2005년 수정계획:
 - *근로자건강증진 중점과제(영역) 있음.
 - *6개 목표, 6개 세부사업
 - *예산계획 '06(138억), '07(166억), '08(181억), '09(204억), '10(221억)

근로자건강증진 세부사업

- 근로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 사업장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 지원
-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 및 운동시설 확충·이용 지원
- 근로자의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사업장의 효율적 영양관리 지원
- 근로자 종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근로자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근로자건강증진 목표

- 금연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비율 목표
 - '04(제조업 52.3% ; 비제조업 42.7%)
 - '10(500인 이상 80%; 500인 미만 60%)
-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사업장 비율 목표
 - '04(제조업 27.7% ; 비제조업 24.1%)
 - '10(500인 이상 40%; 500인 미만 25%)
- 운동지도프로그램 사업장 비율 목표
 - '04(제조업 41.4% ; 비제조업 40.9%)
 - '10(500인 이상 60%; 500인 미만 30%)

근로자건강증진 목표

- 자체급식사업장 영양관리프로그램 시행
 - '04(제조업 27.8% ; 비제조업 24.1%)
 - '10(300인 이상 80%; 300인 미만 20%)
- 종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 현재 자료 없음
 - '10까지 매년 전년 대비 10% 증가
- 건보공단 건강검진, 암 검진 수검률 목표
 - '03(1차수검률 82%; 2차수검률 63.6%)
 - '10(95%)

일반적 개입프로그램

- 금연
- 절주
- 운동
- 영양
- 체중
- 스트레스
- 자가치료, 의료이용
-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상담, 자문
- 참여, 지지, 네트워크

전문가의견조사 (제공될 빈도순)

- 피트니스, 금연, 혈압관리, 스크리닝, 상해예방, 개인 스트레스관리, 체중관리, 콜레스테롤관리, 자가관리, 영양, 건강 자원 이용, 건강위험 평가, 조직의 스트레스관리, 모자보건, 건강관련설비
 - Harris, J.S.(1994)
 - The future of health promotion

구조적 문제 사례: Job Strain

- Job Demand
- Control Span
- Social Support
- 흡연, 음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구조적인 노력이 동반될 필요 있음

국민건강증진법과 직장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에
- 직장건강증진과 관련된 규정이
별로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책무

- 제4조(정부의 책무) 1항:
5. 안전보건교육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참조: 2조(정의)에 관련 내용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 제5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의무

-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주등의 협조

- 제3조의7 (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그 밖의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본조신설 1997.5.16]

미국

- 개인행태를 중시함:
흡연, 음주
- 회사측에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 1970년대부터
행태중심 건강증진 추진

일본

- 개인행태 중시함:
생활습관병
- 노령화에 대비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
- 1980년대부터
체력증진 중시 건강증진 추진
- 노동안전위생법

유럽연합

- 건강한 노동력 확보:
직업성 질환과 부상을 해결하고자 함
- 건강보호: 작업관련 유해인자 줄임
- 건강증진: 직장이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 제공
(금연, 영양, 체력 등)
노동자 건강, 복지 기여 작업조건
- 1997 룩셈부르크선언:
"Healthy people in healthy organization"
participation, integration 등 강조

영국 NHS의 직장건강증진

- 건강의 중요성 인식 증가시킴
- 흡연, 음주, 에이즈 정책을 개발, 실행
- 건강 식생활, 신체 활동, 긍정적 (정신/신체) 건강을 증진
- 직장이 지속적 개발을 할 방법 연구
- 보건/안전 법률 검토, 건강증진 행위 강화 훈련 정책 실행
- 직원 참여 증가, 직원 교체 감소 접근법 지지

성공적 개입의 특징

- 영국 보건교육위원회
- 선임 관리자의 지지
- 기획, 실행 등에 직원의 참여
- 특정 집단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가 능 위험요인에 집중(예. 스트레스, 양)
- 개별 조직에 맞는 프로그램
- 훌륭한 자원

보건교육위원회 지적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건강 지식/가치와 개인 행동에 초점
- 노동자의 사회적, 물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음 지적
- 인구집단 정책과 집단, 개인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는 통합프로그램 제안

직장 건강증진의 요소

- 연계노력
산업보건, 안전, 인사관리, 품질관리, 훈련 등
- 참여와 협조
사업주, 근로자 등 모든 인력
- 포괄적 접근방법
개인행동 변화, 작업/조직환경 설계, 의사소통/마케팅 활용 등

접근방법

- 행동변화와 보건교육
- 건강결정요인 영향 공중보건학적 접근
- 현대 산업보건/안전의 핵심 건강증진
- 질병 걸근율 감소 전략
- 조직변화의 핵심 건강증진

직장 건강증진의 미래

- 사적 영역 확대 유도, 지원
- 전문인력 확보
- 기업경영 기술의 상당 부분 적용
- 본인, 가족 등의 자발적 활동 중시
- 건강 마케팅: 대중매체, 사회마케팅
- 개인행동 변화와 사회/환경 체계
- 비용-효과 검증
- 지속적 질 향상 노력
- 현재 정량화될 수 없는 중요인자도 중시